

국 민 안 전 처

시 정 요 구

제 목 재난복구비 지급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창원시, 김해시

내 용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전을 위하여 각호76)와 같이 복구비 등(이하 “재난복구비”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고,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2013~2015년에 [표 1]과 같이 재난복구비를 지급하였다.

[표 1] 2013~2015년 경상남도 재난복구비 지급현황

시·군	지급세대수	지급금액(천원)	지급기간	비고
18개 시군	3,286	1,652,500	2013~2015	

* 자료 :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주(主)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재난복구비를 지급할 경우

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51조에 근거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세무서, 국

76) 재난 및 안전관리기 본법 제66조 제3항 각호

1. 사망자·실종자·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

2.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

3.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
4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·임업인·어업인의 자금 융자, 농업·임업·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

5.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

6.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

7. 주 생계수단인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8.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

9.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민연금공단,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주민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수준, 보험가입 유형 등 주(主) 생계수단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·확인하고 지급여부를 결정여야 한다.

그러나, 경상남도 창원시 및 김해시에서는 2014년도 재난복구비를 지급하면서 피해주민의 주(主) 생계수단 등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과 [표 2]와 같이 부적격자 4명에게 5백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.

[표 2] 2014년 경상남도 재난복구비 부적격 지급현황

시·군	지급사유	환수대상(명)	환수금액(원)	비고
계		4	5,000,000	
창원시	농작물 피해	2	3,000,000	
김해시	농작물, 산림작물 피해,	2	2,000,000	

* 자료 : 경상남도 제출자료 재구성

조치할 사항 창원시장, 김해시장은

부당하게 지급된 복구비 5,000천원을 회수 및 반납 조치 하시고, 향후 재난복구비 지급시 부적격자에게 복구비가 지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